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0.17.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부칙(제2020-129호, 2020.12.29.)에서 규정한 숙취
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한 식품등의 요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식품의 요건 정비(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조제4항제3호)
- 1)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
일하게 제조 필요
 - 2)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HACCP 시설 또는 GMP
시설에서 제조·가공한 기능성 원재료 사용 가능

3)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

나.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명확화(제6조제2항)

1)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하는 기능성 내용의 표시방법 등 규정 정비

다.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개별기준에 대한 적용 근거 명확화(별표1제2호나목)

1)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개별기준을 운영 중으로, 해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 개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368호, 2024.8.8.(’24.8.8.~’24.10.7.)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5.10.) :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6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중전의 제2호) 전단 중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기능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중전의 제3호) 본문 중 “식품등에 사용된 기능성”을 “기능성”으로, “적용업소”를 “적용업소(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성”을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으로, “식품등”을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증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2.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④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절차와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등의 특성상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 성분의 표시량 기준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분 함량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증된 기능성 성분 함량의 표시량 기준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

⑤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소비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능성”을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 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내용

예 : ‘숙취해소’ 라는 내용

2. 기능성 성분 함량(최종제품으로 실증한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 기능성 성분 함량 표시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1)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을 준용한다.

3. 1일 섭취기준량

4.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6.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7.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제7조제4호 중 “비율”을 “비율(제6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2024- 62호, 2024.10.1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식품등의 요건) <신 설></p> <p>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p>	<p>제5조(식품등의 요건)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p> <p>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 -----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p> <p><삭 제></p>

<p>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p> <p>2.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1일 섭취기준량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1일 섭취기준량 적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한다.</p> <p>3. 식품등에 사용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p>	<p>1. 기능성----- -. ----- ----- ----- ----- ----- ----- ----- ----- ----- ----- ----- -----</p> <p>2. 기능성----- -- 적용업소(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 한다)----- ----- ----- ----- ----- ----- ----- -----</p>
--	--

제외한다.

4.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절차와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등의 특성상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분 함량 기준

-----.
<삭 제>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5.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소비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 마다 제 4호에 따른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증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2.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신 설>

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④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절차와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등의 특성상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신 설>

제6조(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①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 설>

분 함량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증된 기능성 성분 함량의 표시량 기준(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

⑤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소비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 마다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

-----.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내용

예 : ‘숙취해소’ 라는 내용

2. 기능성 성분 함량(최종제품으로 실증한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 기능성 성분 함량 표시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1)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을 준용한다.

3. 1일 섭취기준량

4.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6.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있는 식품등에 한하여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공개 등) 제6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5. 6. (생략)

7.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③ 제1항 또는 제2항-----

-----.

제7조(자료 공개 등)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비율(제6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5. 6. (현행과 같음)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통기준

가. 식품유형별로 각 영양성분의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해당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 단위로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이하이면 50g(mL)으로 하고,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경우와 식용유지류 중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100g(mL)으로 한다.

영양성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① 일반식품	②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③ 김치류, 장류	④ 식용유지류	⑤ 소스, 마요네즈	⑥ 우유, 가공유	⑦ 치즈	⑧ 초콜릿
총지방	10.0 g 이하	10.0 g 이하	10.0 g 이하	-	-	10.0 g 이하	15.0 g 이하	-
포화지방	3.0 g 이하	3.0 g 이하	3.0 g 이하	20.0 g 이하	3.0 g 이하	5.0 g 이하	10.0 g 이하	-
트랜스지방	0.2 g 이하	0.2 g 이하	0.2 g 이하	2.0 g 이하	0.2 g 이하	0.5 g 이하	0.8 g 이하	0.2 g 이하
당류	20.0 g 이하	26.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 g 이하	20.0g 이하
나트륨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400.0 mg 이하

주) ①일반식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공식품 중 ②~⑧을 제외한 가공식품

2. 개별기준

가. 원재료 또는 성분별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다음의 영양성분 ‘저’ 표시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 표시 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1	인삼	면역력 증진·피로·빠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3	클로렐라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4	스피루리나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5	프로폴리스 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저 당류
6	구아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7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8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방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
9	매실추출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0	구아검/ 구아검가수분해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저 당류 -
11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
12	대두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저 당류 -
13	목이버섯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연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식이섬유		
14	밀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
15	보리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6	옥수수겨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저 당류
17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저 당류 -
18	차전자피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
19	호로과종자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20	알로에 겔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1	프락토올리고당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2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3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24	대두단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25	폴리감마글루탐산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6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27	라피노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28	분말한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연번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29	유단백 가수분해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통보받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개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